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51호 2019. 12. 12.(목)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28호	남해군 과태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남해군 조례 제243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
남해군 조례 제2431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남해군 조례 제2432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13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155호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20
남해군 고시 제2019-157~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7
남해군 고시 제2019-162호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32
남해군 고시 제2019-163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42
남해군 고시 제2019-164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45
남해군 고시 제2019-165호	가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49
남해군 고시 제2019-166호	도로명주소 고시	52
남해군 고시 제2019-16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 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601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와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59
남해군 공고 제2019-1608~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64
남해군 공고 제2019-1613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봉황산, 차산, 남산공원)부지매입 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66
남해군 공고 제2019-1614호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73
남해군 공고 제2019-1615~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93
남해군 공고 제2019-1619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95
남해군 공고 제2019-1630호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100
남해군 공고 제2019-1676호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107
남해군 공고 제2019-1678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13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28호

남해군 과태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과태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과태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역 보건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를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2조(「남해군 지하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하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29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을 “예산, 전략개발”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행정복지국과 경제산업국” 을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안전건설국”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무과, 문화청소년과” 를 “청년혁신과, 재무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 군민소통, 후생, 정보전산, 통신관제에 관한 사항
2. 민원행정, 지적관리, 지적정보, 부동산등록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 노인복지,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장사행정에 관한 사항
4. 청년과혁신, 남해정착지원, 평생학습, 교육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5. 부과, 경리, 재산관리, 세입관리, 재산세,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경제산업국)” 을 “(관광경제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관광경제국에 문화관광과, 지역활성과, 해양수산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 을 “관광경제국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관광정책, 관광개발, 관광시설, 관광콘텐츠, 문화예술, 문화재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친환경에너지,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산기획, 어업지도, 양식산업, 연안관리, 해양보전,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레포츠에 관한 사항

제2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재난안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환경녹지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기획, 방재복구, 민방위,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공공건축, 건축민원, 복합민원,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3. 건설관리, 농업기반, 도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자원순환, 환경보전, 환경시설, 공원녹지,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5. 상하수도 관리운영,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료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인력육성, 축산정책,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2. 유통수출, 먹거리순환, 농식품산업, 소득개발, 농촌자원에 관한 사항
3. 환경농업, 식량작물, 원예특작, 마늘, 농기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담당관,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을 “부군수” 로 한다.

③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활력과장” 을 “농축산과장” 으로 한다.

④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청소년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⑤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소, 읍·면” 을 “읍·면”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6항 중 “사업소장, 읍·면장” 을 각각 “읍·면장” 으로 한다.

⑥ 「남해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 의회사무과” 를 “의회사무과” 로 한다.

⑦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청소년과장” 을 “청년혁신과장” 으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 중 “행정과” 를 각각 “청년혁신과” 로 한다.

⑧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관광진흥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재난안전과장” 으로 한다.

⑨ 「남해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25명” 을 “3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 을 “관광경제국장, 안전건설국장” 으로 한다.

⑩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26조제3항 중 “문화청소년과장” 을 각각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⑪ 「남해군 김만중문학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청소년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⑫ 「남해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청소년과장”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⑬ 「남해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청소년과장” 을 각각 “청년혁신과장” 으로 한다.

⑭ 「남해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청소년과장” 을 “청년혁신과장” 으로 한다.

⑮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 을 “관광경제국장” 으로 한다.

⑯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담당관, 주민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지역활성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을 각각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활성과장, 해양수산과장, 체육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 한다.

⑰ 「남해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담당관” 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⑱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담당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을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으로 한다.

⑲ 「남해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안전총괄과장” 을 “재난안전과장” 으로 한다.

⑳ 「남해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전총괄과장” 을 “재난안전과장” 으로, “안전총괄팀장” 을 “안전기획팀장” 으로 한다.

㉑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안전총괄과장” 을 “재난안전과장” 으로 한다.

㉒ 「남해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 을 “체육진흥과장” 으로 한다.

㉓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육시설사업소장” 을 “체육진흥과장” 으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43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07명” 을 “64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4명” 을 “630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643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613					
4급	4	4				
5급	33	15	3	1	4	10
6급이하 소계	575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7					

남해군 조례 제2431호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타 시군에서 전입한 학생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성명 작성란에 “(남/여)”를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32호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9년 12월 12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시장구역”이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시설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모유수유 휴게실(모유수유·착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에 따라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군수는 시장구역을 정할 때에는 지역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구역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5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 건축 중인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3. 그밖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건축물

제6조(시장의 인정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7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등과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리개 등의 편의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산가치가 상실된 편의시설을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남해군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비 가리개는 내용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항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화장실은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듣거나, 상인조직등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② 상인회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군수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16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제9조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여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군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군·상인조직등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이 상인조직등에게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상인조직등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할 때에는 입점상인과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는 규칙 제 12조 및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설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9 - 155호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남해군고시 제2019-54호(2019.05.02.)로 결정된 사항 중 일부 착오를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위 치: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 2. 규 모: 지구단위계획구역 - 39,388㎡
도로(중로3-10호선) - B=12m, L=556.5m, A=10,472㎡
- 3.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붙임 참조
- 4. 관계도면: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5	대지포온천 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에 의한 개발	39,388	남해군 고시 제2019-54호 (2019.5.2.)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8	대지포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39,388	-	39,388	남해군 고시 제2019-54호 (2019.5.2.)	-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 공간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경관녹 지	삼동면 물건리 산241-7번지 일원	944	-	944	남해군 고시 제2019-54호 (2019.5.2.)	
기정	2	녹지	경관녹 지	삼동면 물건리 845-4번지 일원	3,618	-	3,618	남해군 고시 제2019-54호 (2019.5.2.)	
기정	3	녹지	경관녹 지	삼동면 물건리 산241-26번지 일원	644	-	644	남해군 고시 제2019-54호 (2019.5.2.)	
기정	4	녹지	경관녹 지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1,734	-	1,734	남해군 고시 제2019-54호 (2019.5.2.)	
기정	5	녹지	경관녹 지	삼동면 물건리 845-1번지 일원	281	-	281	남해군 고시 제2019-54호 (2019.5.2.)	

남 해 군 공 보

(22)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I	23,918	I-1	삼동면 물건리 산241-11번지 일원	5,020	숙박시설
			I-2	삼동면 물건리 845-4번지 일원	5,405	
			I-3	삼동면 물건리 산241-26번지 일원	5,936	
			I-4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525	
			I-5	삼동면 물건리 857-1번지 일원	1,421	SPA
			I-6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20	상가 및 카페
			I-7	삼동면 물건리 산241-10번지 일원	423	
			I-8	삼동면 물건리 산241-1번지 일원	768	판매 및 관리

2)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II	3,250	II-1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2,621	도로
			II-2	삼동면 물건리 843-2번지 일원	629	환경오염 방지시설

3) 녹지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	III	12,220	III-1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4,295	공원
			III-2	삼동면 물건리 산241-3번지 일원	704	
			III-3	삼동면 물건리 산241-7번지 일원	944	경관녹지
			III-4	삼동면 물건리 845-4번지 일원	3,618	
			III-5	삼동면 물건리 산241-26번지 일원	644	
			III-6	삼동면 물건리 848번지 일원	1,734	
			III-7	삼동면 물건리 846번지 일원	281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1 ~ 3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숙박시설 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권장용도	○ 휴양콘도미니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	I-4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숙박시설 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권장용도	○ 휴양콘도미니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	I-5	용도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휴양·문화 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권장용도	○ 스파 및 사우나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6, 7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상가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권장용도	○ 상가 및 카페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	I-8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지구 및 상가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
			권장용도	○ 판매 및 관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6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2) 공공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I-1	용도	지정용도	○ 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II-2	용도	지정용도	○ 저류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3) 녹지용지 (착오정정): 계획내용 누락사항 정정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	Ⅲ-1, 2	용도	지정용도	○ 공원 (오수처리시설, 저류지, 지하매설)	○ 공원 (지하: 오수처리시설, 저류지, 공용주차장, 상가)
			권장용도	-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	-	
		배 치	○ 도면참조	○ 도면참조	
		-	Ⅲ-3 ~ 7	용도	지정용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도면참조				

5.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0	12	국지 도로	556.5	삼동면 물건리 900-3 일원	삼동면 물건리 1080 일원	일반 도로	-	남해군 고시 제2019-54호 (2019.5.2.)	

남해군 고시 제2019 - 15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봉천)
2. 성 명 : 정숙0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491번지(326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135㎡
7. 점용기간 : 2020. 1. 1. ~ 2024.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9 - 1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봉천)
2. 성 명 : 정한0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10번가길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35번지(985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255㎡
7. 점용기간 : 2020. 1. 1. ~ 2024.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9 - 1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다천천)
2. 성 명 : 이소장0
3. 주 소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363번길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번지(121-1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711㎡
7. 점용기간 : 2020. 1. 1. ~ 2024.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9 - 16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다천천)
2. 성 명 : 이소장0
3. 주 소 :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363번길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785번지(121-5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175m²
7. 점용기간 : 2020. 1. 1. ~ 2024.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9 - 16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입현천)
2. 성 명 : 조현0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강진만로62번길
4. 점용목적 : 경작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입현리 1623-1번지(703번지 인근)
6. 점용면적 : 1215m²
7. 점용기간 : 2020. 1. 1. ~ 2024. 12. 31.

남해군 고시 제2019 - 162호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에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에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 1. 위 치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봉화리, 동천리 일원
- 2. 면 적 : 273,532.8㎡
- 3.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에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
- 4. 관계도면 : 실음생략

<붙임>

남해군관리계획(독일마을·원예예술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2.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8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	삼동면 물건리 257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73,532.8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8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봉화리, 동천리 일원	273,532.8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 4.1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3,532.8	-	273,532.8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86,797.9	-	86,797.9	31.7	
동천문화촌(전통 공예촌)	4,144.0	-	4,144.0	1.5	I-1
원예마을(예술인 마을)	17,856.0	-	17,856.0	6.5	I-2
문화관(전통문화의 거리)	8,295.0	-	8,295.0	3.0	I-3
식물원	3,010.0	-	3,010.0	1.1	I-4
독일교포 정착마을	38,815.9	-	38,815.9	14.2	I-5
숙박시설(독일문화센터)	14,677.0	-	14,677.0	5.4	I-6
공공시설용지	42,770.1	증)20.0	42,790.1	15.7	
도로	22,056.0	증)51.0	22,107.0	8.1	II-1
주차장	14,124.6	감)31.0	14,093.6	5.2	II-2
관리사 및 화장실	1,616.6	-	1,616.6	0.6	II-3
광장	2,544.1	-	2,544.1	0.9	II-4
소공원	738.8	-	738.8	0.3	II-5
하수처리장	567.0	-	567.0	0.2	II-6
배수지	882.0	-	882.0	0.3	II-7
가압장	241.0	-	241.0	0.1	II-8
녹지용지	143,964.8	감)20.0	143,944.8	52.6	
보전녹지	127,980.8	감)20.0	127,960.8	46.8	III-1
녹지	15,984.0	-	15,984.0	5.8	III-2

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변경)

4.2.1. 교통시설 (변경)

가. 도로 결정조서 (변경 없음)

□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3	1,579	12,921	-	-	-	1	506	4,555	2	1,077	8,134
소로	3	1,579	12,921	-	-	-	1	506	4,555	2	1,077	8,134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506	물건리 1210	봉화리 2573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20	봉화리 2574	봉화리 2627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757	봉화리 2626	동천리 산395-1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나.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1	삼동면 봉화리 2572번지	5,194.0	-	5,194.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변경	2	주차장2	삼동면 봉화리 2613번지	7,343.0	감)31.0	7,312.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4	주차장4	삼동면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587.6	-	1,587.6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주차장	○ 구역축소(감 31㎡) A=7,343 → 7,312㎡	○ 보도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주차장 면적 축소

4.2.2. 공간시설 (변경 없음)

가.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 광장	삼동면 동천리 2099번지 일원	2,544.1	-	2,544.1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나.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공원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소공원	삼동면 물건리 1203번지	738.8	-	738.8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4.2.3.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2	동천 배수지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882.0	-	882.0	남해군고시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9	동천 가압장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241.0	-	241.0	남해군고시 제2012-43호 (2012.05.17.)	

4.2.4.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가.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수도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567.0	-	567.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4.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4.3.1. 관광·휴양시설용지 (변경 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86,797.9	-	86,797.9	I-1	삼동면 동천리 1000-2번지 일원	4,144.0	-	4,144.0	동천 문화촌
				I-2	삼동면 동천리 산400-5번지 일원	17,856.0	-	17,856.0	원예 마을
				I-3	삼동면 봉화리 2611번지 일원	8,295.0	-	8,295.0	문화관
				I-4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3,010.0	-	3,010.0	식물원
				I-5	삼동면 물건리 1136번지 일원	38,815.9	-	38,815.9	독일 마을
				I-6	삼동면 물건리 1154번지 일원	14,677.0	-	14,677.0	숙박 시설

4.3.2. 공공시설용지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42,770.1	증20.0	42,790.1	II-1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22,056.0	증51.0	22,056.0	도로
				II-2	삼동면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4,124.6	감31.0	14,124.6	주차장
				II-3	삼동면 봉화리 2571번지 일원	1,616.6	-	1,616.6	관리소, 화장실
				II-4	삼동면 동천리 2099번지 일원	2,544.1	-	2,544.1	교통 광장
				II-5	삼동면 물건리 1203번지 일원	738.8	-	738.8	소공원
				II-6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일원	567.0	-	567.0	하수 처리장
				II-7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882.0	-	882.0	배수지
				II-8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241.0	-	241.0	가압장

4.3.3. 녹지용지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Ⅲ	143,964.8	감20.0	143,964.8	Ⅲ-1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127,980.8	감20.0	127,960.8	보전 녹지
				Ⅲ-2	삼동면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5,984.0	-	15,984.0	녹지

4.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변경 없음)

4.4.1. 관광·휴양시설용지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용도	높이	
I-1	삼동면 동천리 1000-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2층이하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2	삼동면 동천리 산400-5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2층 이하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남 해 군 공 보

(38)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3	삼동면 봉화리 2611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원예학교, 식당, 카페, 기념품판매, 강의실, 영상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2층이하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4	삼동면 봉화리 산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목의 동·식물원	
			권장용도	○ 식물원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2층 이하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5	삼동면 물건리 1136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 단독주택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3층 이하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6	삼동면 물건리 1154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3·4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4층 이하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4.4.2. 공공시설용지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I-1	삼동면 봉화리 282-1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도로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II-2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권장용도 ○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이하		
		용적률 ○ 1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I-3	삼동면 봉화리 2571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권장용도 ○ 관리사 및 화장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2층이하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I-4	삼동면 동천리 209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교통광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남 해 군 공 보

(40)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I-5	삼동면 물건리 1203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소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I-6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하수처리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I-7	삼동면 물건리 산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수도공급설비 - 배수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II-8	삼동면 물건리 산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수도공급설비 - 가압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4.4.3. 녹지용지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Ⅲ-1	삼동면 동천리 398-2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보전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Ⅲ-2	삼동면 물건리 1224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10.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원색지양

남해군 고시 제2019 - 163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18-130호(2018.08.30.)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남해군 고시 제2018-169호(2018.12.10.)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추진 중인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2. 사업기간의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해군청(문화청소년과☎055-860-8623)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11. 29.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64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 명 칭 :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공사명	시설종류	위치	사업면적	비고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교통시설 (주차장)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643-4일원	1,468.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남해군수(담당부서:문화청소년과)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2019년 6월 15일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6개월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비 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1	남해읍 차산리	643-4	잡	1,370.6	1,370.6		남해군	-	
2	남해읍 차산리	821-1	도	7.0	7.0		남해군	-	
3	남해읍 차산리	822-1	도	16.0	16.0	남해읍 북변리 389-4	김*민		
4	남해읍 차산리	823-1	도	22.0	22.0	남해읍 아산리 388-1	이*일		
5	남해읍 차산리	825-3	도	53.0	53.0	남해읍 차산리 712	김*욱		
합계				1,468.6	1,468.6				

남해군 고시 제 2019-164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제238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1. 29.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46)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554,303,725	551,318,829	2,984,896	
일 반 회 계	452,946,883	448,709,234	4,237,649	
특 별 회 계	101,356,842	102,609,595	△1,252,753	
상수도특별회계	22,056,730	22,165,360	△108,630	
청사건립특별회계	52,207,373	52,207,373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5,887	955,887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25,820	2,125,82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85,587	685,587	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23,325,445	24,469,568	△1,144,123	

□ 세입예산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52,946,883	448,709,234	4,237,649	
지 방 세 수 입	13,595,300	14,405,300	△810,000	
지방세	13,595,300	14,405,300	△810,000	
세 외 수 입	11,489,355	11,257,261	232,094	
경상적세외수입	6,223,550	6,202,040	21,510	
임시적세외수입	5,265,805	5,055,221	210,584	
지방교부세	199,934,635	196,358,727	3,575,908	
조정교부금등	19,994,608	18,286,608	1,708,000	
보조금	155,478,189	156,885,955	△1,407,766	
국고보조금등	125,906,063	126,959,303	△1,053,240	
도비보조금등	29,572,126	29,926,652	△354,5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454,796	51,515,383	939,413	
보전수입등	51,028,155	50,088,742	939,413	
내부거래	1,426,641	1,426,641	-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01,356,842	102,609,595	△1,252,753	
지방세			-	
세외수입	4,877,718	4,554,603	323,115	
경상적세외수입	4,549,650	4,379,535	170,115	
임시적세외수입	328,068	175,068	153,000	
지방교부세	532,000	502,000	30,000	
보조금	16,260,085	16,849,440	△589,355	
국고보조금등	14,578,538	15,078,538	△500,000	
도비보조금등	1,681,547	1,770,902	△89,35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9,687,039	80,703,552	△1,016,513	
보전수입등	3,890,751	3,879,540	11,211	
내부거래	75,796,288	76,824,012	△1,027,724	

□ 세출예산

○ 일반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452,946,883	448,709,234	4,237,649	
인 건 비	53,092,806	57,795,638	△4,702,832	
물 건 비	27,170,012	27,988,237	△818,225	
경 상 이 전	127,568,140	130,846,715	△3,278,575	
자 본 지 출	183,646,229	179,961,191	3,685,038	
용 자 및 출 자			-	
보 전 재 원			-	
내 부 거 래	48,549,497	36,577,221	11,972,276	
예 비 비 및 기 타	12,920,199	15,540,232	△2,620,033	

○ 특별회계(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비 고
합 계	101,356,842	102,609,595	△1,252,753	
인 건 비	3,245,220	3,445,900	△200,680	
물 건 비	5,666,257	5,989,345	△323,088	
경 상 이 전	4,843,912	4,881,912	△38,000	
자 본 지 출	32,965,821	33,656,806	△690,985	
용 자 및 출 자			-	
보 전 재 원	1,137,476	1,137,476	-	
내 부 거 래	53,352,926	53,352,926	-	
예 비 비 및 기 타	145,230	145,230	-	

남해군고시 제2019-165호

가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마을 일원에 추진중인 가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시행 계획이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일반농산어 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9. 12. 12.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가천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남면 흥현리 가천마을 일원
4. 사업(변경) 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변경없음) : 마을회관 2층 증축 (A=33.8㎡)
 - 다랭이 음악당(삭제)→ 다랭이 쉼터(변경)
 - 다랭이 전시관(변경없음)
 - CCTV설치 (12개소→6개소)
 - 역량강화사업(변경없음)
 -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등 1식
5. 총 사업비(변경없음) : 466백만원(국비 326, 지방비 140)
6. 사업기간(변경) : 2017년 2월 ~ 2019년 12월→2017년 2월~ 2020년 3월
7.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지역활성화(지역개발팀, 055-860-3615)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사업(변경)내역 : 불임참조

<붙임>

사업비수지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			비고
		계	기승인	금회승인 향후계획	
합 계	466,000		466,000	466,000	
○ 공사비	388,606		388,606	403,214	-
1)기초생활기반	346,606		346,606	365,954	-
- 마을회관 리모델링	189,816		189,816	218,633	-
- 다랭이 음악당	36,440		36,440	-	감
- 다랭이 쉼터	-		-	42,510	증
- 거리갤러리 조성	40,050		40,050	80,400	증
- CCTV설치	80,300		80,300	24,411	- 감
2)지역역량강화	42,000		42,000	37,260	- 감
○ 관리비 등	77,394		77,394	62,786	감
- 기본조사비	9,569		9,569	9,569	-
- 세부설계비	11,897		11,897	11,897	-
- 공사감리비	29,048		29,048	34,260	-
- 사업관리비	5,065		5,065	7,060	-
- 잡지출	21,815		21,815	-	-

남해군 고시 제2019-16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43-51 외 2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 도 열 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12.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부 여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정리 20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843-51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힌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정리 395-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32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힌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탁월리 109-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1145-9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힌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84-8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474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834	경상남도 남해읍 남해대로 2981-19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6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도마리 1891-1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남해대로 3264-55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95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65-17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80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26	20090427	행정리를 이용, 마을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9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대사리 634, 634-1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탐동로 65-31	20090427	고현면 소재지를 지나가는 중심도로. 마을 중앙시장 입구에 탐이 있어 붙여진 이름임	
10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74-7	경상남도 남해읍 화전로 150	20090427	남해를 소재지의 중심도로로서 아름다운 남해를 나타내는 옛 지명을 반영	
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신구리 129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103번길 40-5	20090427	남면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1115-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569번길 18-12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6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564-7, 558-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광운로21번나길 14-49	20100915	광운로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08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270번길 38-41	20090427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22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364번길 149	20090427	설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211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287번길 39-52	2009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69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356번길 22-6	20090427	양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임현리 406-33	경상남도 남해읍 에코파크길 113-35	20090427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조성되는 녹색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길임을 반영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902-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로51번길 33-19	20100915	평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18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홍신로579번길 44-40	20090427	홍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41-1	경상남도 남해읍 광운로46번길 6	20161209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의한 구간변경	

폐 지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경상남도 남해군 고힌면 탐동로 57-14	신축 출입구 변경으로 인한 도로명주소 폐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두양로52번길 9-34	건물 양성화로 인한 도로명주소 1나만 사용

남해군 고시 제2019 - 168호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도로(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12.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56)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구분	종류	위치	비고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남해군계획시설사업 (교통시설 : 도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결 정(M)		금 회(M)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m)	폭	연장	폭	연장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소로	2	37	8	8	237	8	71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도시건축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사업기간

구분	사업기간		비 고
	당초	변경	
도시계획도로 (소로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2018.9.27. ~ 2020.2.29.	2018.9.27. ~ 2020.6.30.	

5.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공기연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1 참조

7.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조서

1.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소로 2-37호, 남해군청~서변마을회관) 개설공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서	비고
	읍·리	지번				주소	성명		
계				2,751	569				
1	남해읍 아산리	419-7	대	18	18		남해군	-	
2	남해읍 아산리	419-14	대	3	3		남해군	-	
3	남해읍 아산리	1433	도	1,601	98		국(국토교통부)	-	
4	남해읍 서변리	323-1	전	86	79		남해군	-	
5	남해읍 아산리	406-4	전	81	60		남해군	-	
6	남해읍 아산리	406-2	도	33	30		남해군	-	
7	남해읍 아산리	405-1	대	13	7		남해군	-	
8	남해읍 서변리	311-1	전	3	3		남해군	-	
9	남해읍 서변리	311-2	도	43	42		남해군	-	
10	남해읍 서변리	311-10	대	8	8		남해군	-	
11	남해읍 서변리	324-1	전	7	7		남해군	-	
12	남해읍 서변리	324-2	도	99	28		남해군	-	
13	남해읍 서변리	323-2	도	69	44		남해군	-	
14	남해읍 서변리	311-11	대	3	3		남해군	-	
15	남해읍 서변리	309-2	도	684	139		남해군	-	

남 해 군 공 보

(58)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일 련 번 호	소 재 지		물건 종류	규격	편입 면적 (㎡)	단 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읍·리	지번 (당초)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1	남해읍 서변리	311-3	주택	블럭스레트	69	㎡	남해읍 서변리	이O봉	대구 달서구	대구신 용보증 재단	가압류	
			가추1	벽체이용 스레트	6	㎡			대구 동구	이O숙	가압류	
			가추2	선라이트	12	㎡			서울 종로구	서울보 증보험 주식회 사	가압류	
			가추3	목조스레트	18	㎡			대구 수성구	이O울	근저당	
			화장실등	블럭스레트	15.75	㎡			대구 수성구	정O수	근저당	
			아래채	블럭스레트	40.5	㎡			서울 강남구	메가주 식회사	근저당	
			보일러실	블럭스레트	3	㎡						
			물탱크	철재지지대 포함	1	식						
			대문	새시조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32	㎡						
			아궁이		1	식						
			석류	R25	1	주						
			화단	2*5	1	식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9-1601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이후, 관내에서 농어촌버스가 운행 하지만 이용객이 없어 행복택시로 일부 또는 전부 대체하여 운행하게 하고(예산절감 및 운수업계 비용절감 효과), 20년부터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이 도입되어 다른 군부와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의 통일화(구간에 상관없이 1인당/100원) 및 행복택시 운행시간 변경(기존 이용 시간은 행복택시 운행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음)등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 가. 제3조제1항2호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추가(관내 탑승객이 전혀 없는 버스노선을 행복택시를 도입하여 운행 가능)
- 나. 제4조제3항 “행복택시 이용요금을 구간에 상관없이 1인당/100원” 으로 통일하여 다른 군부와의 형평성 및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의 효율화 추구
- 다. 제5조제1항 “행복택시 운행시간을 연중 05:00~22:00” 으로 개정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주민들의 운행편의 도모
- 라. 제8조제1항 행복택시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운행일지(별지서식)를 삭제하여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정산 간소화 및 부정운행방지

4. 의견제출

가. 의견 제출기간 : 2019년 12월 1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56, 팩스 055-860-370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내용은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55-860-34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2. “보물섬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대상 마을 선정)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마을회관까지 5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2.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거나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전부 또는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제4조(운행대상 및 방법) ① 탑승 대상은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보물섬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보물섬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탑승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하고, 정상요금과 탑승자 부담 요금의 차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행시간 및 횟수) ① 보물섬 행복택시의 운행시간은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② 운행횟수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 범위, 이용실적,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다른 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생활권 읍·면 소재지 지역으로 한다.

제7조(운행 중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1개월간 이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비용지급을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 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보물섬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조제2항 관련>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방법

운행횟수	운행방법
<p>○ 마을당 월 배부되는 이용권 매수만큼 이용가능. ex) ○○면○○마을에 배부되는 월 이용권 쿠폰이 35매일 경우 최대 횟수는 35회</p>	<p>운행횟수 이내에서 운행시간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p>

남해군 공고 제 2019 - 160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정영0	주소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소하천명		유포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노구리 1417번지		
	면적	90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목적 및 사유	경작		

남해군 공고 제 2019 - 160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한만0	주소	남해군 남면 두양로	
	소하천명		우형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면 당항리 2111번지(1631번지 인근)			
	면적	11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목적 및 사유	진입로			

남해군 공고 제2019-1613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봉황산, 차산, 남산공원)부지매입 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봉황산, 차산, 남산공원) 부지매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02.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봉황산, 남산, 차산공원) 부지매입 사업

나. 위치

- 봉황산공원 : 남해읍 아산리 248-4번지 일원
- 남산공원 : 남해읍 서변리 산1-1번지 일원
- 차산공원 : 남해읍 차산리 746번지 일원

다. 사업량 : 198,831㎡(69필지)

라.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0년 1월 ~ 2020년 6월중(※보상일정은 기관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 개인별 현금 보상(계좌이체)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알림→감정평가의뢰 및 실시→보상액 산정→보상협의요청
→협의→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공탁 →이의재결 또는 소송

라. 기타사항 :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 통지 예정

3. 감정평가 선정 및 시행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선정방법 : 3인을 선정하되, 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추천하지 않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은 경우 2인 선정

다. 추천방법 :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라. 추천기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미등기 필지 거소불명 등)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보상계획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따른 분할측량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공원관리팀(☎055-860-3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 끝.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 조서

○ 공사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봉황산, 차산,남 산공원) 부지매입 사업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예정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합 계				250,208	198,831	-	-	-	-	-	-
1	남해읍 북변리	588-1	전	688	688	재단법인○상 ○도○교○단					봉황산공원
2	남해읍 북변리	612-2	전	674	44	김○노					
3	남해읍 북변리	산10-3	임	27,559	27,559	송○원 교○호					
4	남해읍 북변리	산10-6	임	24,397	17,603	남해군 ○교					
5	남해읍 북변리	산10-7	임	2,182	2,129	남해군 ○교					
6	남해읍 아산리	237-1	묘	255	255	정○우					
7	남해읍 아산리	237-3	전	96	96	한○민					
8	남해읍 아산리	237-4	전	331	331	김○옥					
9	남해읍 아산리	281-1	전	383	383	우○윤		남해신○협 동○합		근저당권 지상권	
10	남해읍 아산리	281-2	전	393	393	우○윤		남해신○협 동○합		근저당권 지상권	
11	남해읍 아산리	301-4	전	225	225	최○막					
12	남해읍 아산리	301-5	전	423	423	최○막					
13	남해읍 아산리	302-2	전	1,137	1,137	장○					
14	남해읍 아산리	307-1	전	582	582	김○철					
15	남해읍 아산리	307-2	전	179	179	김○철					
16	남해읍 아산리	307-4	전	119	119	하○규					
17	남해읍 아산리	980	전	377	377	곽○석					
18	남해읍 아산리	982-2	전	1,545	1,424	최○선					

남 해 군 공 보

(70)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예정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9	남해읍 아산리	산132 (산132-1 산132-2 산132-3 산132-4 산132-5 산132-6)	임	28,660	22,944	이○찬 박○철 박○자 김○규 박○규 이○석 이○남 박○종 박○경		김○희		가처분	132-1
20	남해읍 아산리	산134-3	임	145	145	손○규					
21	남해읍 아산리	산140-1	임	3,769	638	우○윤		남해신○협 동○합		근저당권 지상권	
22	남해읍 아산리	산142	임	23,299	21,797	대한불교조계종 ○림○ 서○준					
23	남해읍 아산리	산143-1	임	15,174	10,622	한○민					
23	남해읍 아산리	산144-10	임	5,471	2,915	김○숙					
25	남해읍 아산리	산144-12	임	3,862	1,946	이○영 황○숙					
26	남해읍 아산리	산144-13	임	4,804	2,182	이○영 황○숙					
27	남해읍 아산리	산145	임	2,678	1,556	미등기1		원○상 이○근		토지대장 상소유자	
28	남해읍 북면리	396-1	임	11,150	5,944	김○재 감○진					차산공원
29	남해읍 북면리	411-2	임	4,295	1,445	최○호					
30	남해읍 북면리	423-2	임	1,108	939	이○철					
31	남해읍 북면리	423-4	임	1,768	1,489	신○두					
32	남해읍 북면리	440-2	대	185	185	최○철					
33	남해읍 북면리	440-11	임	17,487	17,122	감○찬					
34	남해읍 북면리	산7-2	임	6,308	6,217	황○주					
35	남해읍 차산리	724-1	임	3,396	865	김○년					
36	남해읍 차산리	728-2	대	380	57	김○숙					
37	남해읍 차산리	728-3	임	4,753	1,454	김○숙					
38	남해읍 차산리	728-6	임	3,028	966	김○자 박○성					
39	남해읍 차산리	729-1	임	2,467	8	하○선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예정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40	남해읍 차산리	746-1	임	11,786	11,786	최○옥					
41	남해읍 차산리	750	답	160	160	김○종					
42	남해읍 차산리	751	전	163	163	공○암					
43	남해읍 차산리	752-1	임	2,182	2,182	김○근					
44	남해읍 차산리	752	임	615	612	김○종					
45	남해읍 차산리	753	전	577	577	공○암					
46	남해읍 차산리	754	전	873	867	김○종					
47	남해읍 차산리	755-1	전	1,471	889	김○렬					
48	남해읍 차산리	755	전	437	251	공○암					
49	남해읍 차산리	758-1	전	99	99	박○진					
50	남해읍 차산리	758-2	전	734	734	박○진					
51	남해읍 차산리	758-5	전	79	79	박○진					
52	남해읍 차산리	758-6	임	5,348	5,348	박○진					
53	남해읍 차산리	758-13	임	7,047	7,047	김○종					
54	남해읍 서변리	195	대	46	14	미등기2		박○조		토지대장상소유자	남산공원
55	남해읍 서변리	249-2	전	463	463	박○환					
56	남해읍 서변리	249-3	전	196	196	이○균					
57	남해읍 서변리	산10	임	496	496	박○조					
58	남해읍 서변리	산2	임	2,975	2,975	임○숙 임○호 박○근 옥○연					
59	남해읍 서변리	산9	임	99	99	임○숙					
60	남해읍 평리	산10	임	893	893	이○택 이○두 이○민					
61	남해읍 평리	산15-2	임	397	397	유○식					
62	남해읍 평리	산15-3	임	1,488	1,488	정○훈					

남 해 군 공 보

(72)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예정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63	남해읍 평리	산18	임	397	397	김○태					
64	남해읍 평리	산19	임	397	397	김○태					
65	남해읍 평리	산20	임	397	397	정○한					
66	남해읍 평리	산24	임	1,091	1,091	미등기3		정○근		토지대장 상소유자	
67	남해읍 평리	산26	임	992	773	정○조					
68	남해읍 평리	산4	임	198	198	미등기4		강○홍		토지대장 상소유자	
69	남해읍 평리	산9	임	2,380	2,380	이○덕 이○두 이○민					

남해군 공고 제 2019 - 1614호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전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1. 개정이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업무 수행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의 분류(안 제10조)

- 주요 공간정보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 자료로 재분류

나.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안 제15조)

- 공간정보의 국외반출 승인권자 변경(군수→행정안전부 장관)

다.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안 21조)

- 위원회 심의를 위한 비공개 자료의 공개요건(목적, 시기, 방법 등) 협의권자 변경(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

4. 예고기간 및 공고방법

- 공고기간 : 2019. 11. 28. ~ 2019. 12. 19. (21일간)
- 공고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5. 의견제출

-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전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4. 30.(화)까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지적관리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
-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12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01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남해군 훈령 제 호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남해군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남해군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간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안지도·점검·감사·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본청 : 민원봉사과장
- 2. 소속기관 : 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인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시행
-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 4.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5.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의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된 공간정보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남해군 보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하며,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업무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분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 공간정보”라 한다)
 -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 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소관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자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군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과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외부로부터 위해 방지
3. 공간정보 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 권한 구분
 -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 권한 제한
 - 나. 작업 범위 제한
 - 다. 열람은 필요 내용에 따라 기본 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관리(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5. 불법 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 ② 군수는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의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간정보 유통망 보호대책) 군수는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간정보 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용
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과 컴퓨터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5. 공간정보 유통망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제14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의 복제·출력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출력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5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보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호구역 설정) ① 군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군수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준수 등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 및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군수는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보안상 위험하고 유해한 행위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 실시하고,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군수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공개정보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20조(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를 보내야 한다.

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목적·시기 및 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군수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3조(보안지도) ① 군수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안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공간정보 관련 제도 또는 조직이 변경된 때
3. 공간정보의 유출·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그 밖에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③ 군수는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점검 및 감사) 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안감사를 위하여 보안담당관 등 공간정보 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한 감사반을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공간정보 보안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업무 취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이 취급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보안담당관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6조(보안사고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3.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공간정보 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가정보원장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공간정보 보안

[별지 제5호서식]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승인서

요 청 자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활용계획			타 당 성	검 토 자
승 인 사 항	보안대책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일시			

남해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검토자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공 개 제 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u>25cm</u> 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u>25cm</u> 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내 시설 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전자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지하시설물도(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아래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 력 :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상수도 :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남 해 군 공 보

2019년 12월 12일

제 651 호 (89)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양배수장경계, 양배수장 기호 - 가스관 : 지상가스관 - 송유관 : 지상송유관, 저장소 - 기타관 : 기타 수송관 - 맨 홀 :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기타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을 말한다) - 특정건물 :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 공간정보	비공개	○접경해역 수심 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개 제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 자료
	공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 자료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주소 기본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 자료
	공개 제한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 자료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개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 자료 ○3차원 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 자료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 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공간정보의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1. 목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남해군이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를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남해군이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 등이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 될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기타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항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따라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3) 반출조치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확인

당직책임자는 숙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숙직자(수위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 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받은 해당 실·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지리 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 장소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의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소집 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다. 반출장소

- 1)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 반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2)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라. 파기절차 및 장소

-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 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당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항 가, 나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원칙적으로 소각장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남해군 공고 제 2019 - 161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권속0	주소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20
	소하천명		동정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대정리 1716번지(270번지 인근)		
	면적	36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목적 및 사유	경작		

남해군 공고 제 2019 - 1616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대표자 (성 명)	운영0	주소	남해군 남면 두양로256번길
	소하천명		우형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면 당항리 2111번지(1925번지 인근)		
	면적	19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목적 및 사유	경작		

남해군 공고 제2019 - 1619호

**남해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힐링빌리지 조성사업)]사업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남해군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5.

남 해 군 수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주차장) 사업
- 명 칭 : 남해힐링빌리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주 차 장 면 적 : 6,471㎡
- 규 모

구 분	합 계	교통시설
		주차장
면 적(㎡)	6,471	6,471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해군수(담당부서:관광진흥담당관실)
-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 31일

6. 열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9.12.05. ~ 2019. 12.19.(14일간)
- 장 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관광진흥담당관실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 및 관광진흥담당관실(055-860-8613)에 비치】**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1. 토지조서(총괄)

■교통시설 : 주차장

구 분	합 계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비 고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필 지 수	면 적(m ²)	
합계	13	6,471	-	-	13	6,471	-	-	
임	5	804	-	-	5	804	-	-	
도	1	5	-	-	1	5	-	-	
전	7	5,662	-	-	7	5,662	-	-	

2. 지목별 토지조서

■교통시설 : 주차장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13	6,471	100.00	
임	5	804	12.4	
도	1	5	0.1	
전	7	5,662	87.5	

3. 소유자별 토지조서

■교통시설 : 주차장

구 분	필지 수(개소)	편입면적(m ²)	구성비(%)	비 고
합계	13	6,471	100.00	
국유지	-	-	-	-
공유지	13	6,471	100.00	남해군
사유지	-	-	-	-

4. 세부토지조서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교통 시설 (주차장)	1	창선면 진동리	산197-27	임	453	23	공유지	남해군	
	2	창선면 진동리	산197-28	임	217	206	공유지	남해군	
	3	창선면 진동리	산197-30	임	629	88	공유지	남해군	
	4	창선면 진동리	639-1	임	351	351	공유지	남해군	
	5	창선면 진동리	639-2	임	136	136	공유지	남해군	
	소계					1,786	804	-	-
	1	창선면 진동리	641-3	도	106	5	공유지	남해군	
	소계					106	5	-	-
	1	창선면 진동리	686-9	전	673	244	공유지	남해군	
	2	창선면 진동리	686-3	전	1,296	625	공유지	남해군	
	3	창선면 진동리	639	전	509	509	공유지	남해군	
	4	창선면 진동리	638	전	1,193	1,169	공유지	남해군	
	5	창선면 진동리	637	전	1,805	1,805	공유지	남해군	
	6	창선면 진동리	641	전	2,301	1,121	공유지	남해군	
	7	창선면 진동리	640	전	1,177	189	공유지	남해군	
	소계					8,954	5,662	-	-
	교통시설(주차장) 편입 토지 소계					10,846	6,471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외권리
1	창선면 진동리	산197-27	임	453	23		남해군		남해군	
2	창선면 진동리	산197-28	임	217	206		남해군		남해군	
3	창선면 진동리	산197-30	임	629	88		남해군		남해군	
4	창선면 진동리	639-1	임	351	351		남해군		남해군	
5	창선면 진동리	639-2	임	136	136		남해군		남해군	
6	창선면 진동리	641-3	도	106	5		남해군		남해군	
7	창선면 진동리	686-9	전	673	244		남해군		남해군	
8	창선면 진동리	686-3	전	1,296	625		남해군		남해군	
9	창선면 진동리	639	전	509	509		남해군		남해군	
10	창선면 진동리	638	전	1,193	1,169		남해군		남해군	
11	창선면 진동리	637	전	1,805	1,805		남해군		남해군	
12	창선면 진동리	641	전	2,301	1,121		남해군		남해군	
13	창선면 진동리	640	전	1,177	189		남해군		남해군	
합 계				-	6,471	-				

남해군 공고 제2019-1630호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를 통한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 목적과 기능(안 제1조, 제2조)
-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아.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055-860-3833(FAX 055-860-3882)
-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원안 의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2. 부결: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알려주어야 하며, 심의 결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제10조 관련)

항목	심사자료	세부 기준	배점
합계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능력 (40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p>□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p> <p>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1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p style="text-align: center;">※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p> <p>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p>□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감점 10점 <p>□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p> <p>□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p> <p>□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p>	

남 해 군 공 보

(106)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계획 시설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계획 인력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남해군 공고 제2019 - 1676호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2.

남 해 군 수

1. 공사의 개요

- 가. 공 사 명 : 도시계획도로(중로1-2호, 남변교차로~평리교차로) 개설공사
- 나. 공사위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90-1번지 일원
- 다. 공사내용 : 도로개설 L=500m, B=20m
- 라. 공사기간 : 2019. 1. ~ 2021.12.
- 마. 공사시행자 :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별첨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90-1번지 외 41필지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12. 12. ~ 2019. 12. 27.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2020년 2월~(추후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통보)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1) 평가기관 : 2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협의(계약체결) ⇒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협의 불성립시)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 토지조서 1부.

남 해 군 공 보

(110)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지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10578 9	140 99						
1	남변리	544 -8	도	205	3	국 (국토교통부)					
2	남변리	545 -3	도	68	25	국 (국토교통부)					
3	남변리	555	도	37,469	20	남해군					
4	남변리	555 -2	답	11	11	남해군					
5	남변리	491 -4	답	44	8	정0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6	남변리	490 -1	도	4,714	3,78 8	국 (국토교통부)					
7	남변리	490 -3	답	5	5	이0훈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	근저 당	
8	남변리	483	도	827	69	남해군					
9	평리	1189 -7	답	7	4	국 (국토교통부)					
10	평리	1599	도	2,928	2,19 3	국 (국토교통부)					
11	평리	1200 -5	대	60	60	이0운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 로	남해농 업협동 조합	남해군 남해읍	근저 당	
12	평리	1200 -2	도	123	86	국 (경상남도)					
13	평리	1594	구	47,495	839	국 (농림수산식 물관리)					

14	평리	1224 -4	답	558	493	남해군					
15	평리	1224 -7	창	48	48	김O석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16	평리	1230 -1	도	3,758	2,350	국 (국토교통부)					
17	평리	1223 -5	답	37	37	장O용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남해신 용협동 조합	남해군 남해읍	근저 당	
18	평리	1221 -8	도	1,489	1,386	남해군					
19	평리	1222 -4	창	14	14	남해축산업협 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20	평리	1230 -4	답	451	451	박O효	부산 해운대 구				
21	평리	1221 -4	잡	213	45	남해군					
22	평리	1230 -2	답	76	76	남해군					
23	평리	1231 -14	도	5	4	남해군					
24	평리	1221 -6	잡	36	35	남해군					
25	평리	1231 -10	잡	281	278	남해군					
26	평리	1221 -7	잡	99	99	남해군					
27	평리	1230 -3	답	165	36	남해군					
28	평리	1180 -1	답	42	1	남해군					
29	평리	1243 -1	답	250	120	남해군					
30	평리	1243 -3	구	260	115	남해군					
31	평리	1179 -1	답	1,227	98	남해군					

남 해 군 공 보

(112)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32	평리	1243 -4	도	50	37	남해군					
33	평리	1203 -3	답	206	67	남해군					
34	평리	1221 -12	잡	6	6	남해축산업 협동조합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35	서변리	197 -5	도	639	33	국(경상남 도)					
36	서변리	194 -2	도	172	124	남해군					
37	서변리	196 -1	도	36	24	국 (국토교통부)					
38	평리	1231 -4	도	482	283	국(경상남 도)					
39	평리	1233 -2	도	218	218	국 (국토교통부)					
40	평리	1231 -15	잡	7	7	남해군					
41	평리	1231 -12	구	51	51	국 (국토교통부)					
42	평리	1241 -3	도	927	452	국(경상남 도)					

남해군 공고 제2019 - 1678호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5)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12.

남 해 군 수

남 해 군 공 보

(114) 제 651호

2019년 12월 12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중로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연 장 (m)	폭 (m)	비 고
도	중로 3-1호, 한빛그린~남산아파트	114	12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연 번	소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25,599	1,350						
1	서변 리	334-2	답	299	299	장O선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2	서변 리	336-3	답	7	7	김O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3	서변 리	336-4	임 야	8	8	김O수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4	서변 리	337-2	답	15	15	정O애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93번길	사하농 업협동 조합	부산 사하구 당리동	근저당	
5	서변 리	337-3	대	15	15					대지권	
6	서변 리	335-1	대	230	150	강O성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 가길				
7	서변 리	335-5	답	109	109	김O표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 길	남해신 용협동 조합	남해읍 북변리	지상권 대지권	
8	서변 리	335-6	답	1	1	김O표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5번 길	남해신 용협동 조합	남해읍 북변리	지상권 대지권	
9	서변 리	359-10	답	227	227	한O심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 길				

10	서변리	359-12	답	125	125	이O철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77				
11	서변리	359-13	답	17	17	이O철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77				
12	서변리	360-3	답	181	181	임O숙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 가길				지분 11/13
						임O호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12길				지분 2/13
13	서변리	491	천	23,653	164	국(국토교통부)					
14	서변리	494-2	도	712	32	국(국토교통부)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 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 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 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055-860-3415)에 비치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12. 12.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도로)

○ 명칭 : 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 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연 장 (m)	폭 (m)	비 고
도 로 명	소로2-14호, 파크에비뉴~정원패밀리	251	8	

4. 사업시행자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성명 : 남해군수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참조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에 비치】**

남 해 군 공 보

2019년 12월 12일

제 651 호 (119)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토지조서

연 번	소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 리 내 용	
합계				1,951	1,924						
1	북변리	265-10	잡	6	6	최O심	남해읍 북변리	미송새마을 금고	남해군 미조면	근저 당 자상 권	2/
						서O수	남해읍 북변리				1/
2	북변리	266-16	답	212	212	최O배	하남시 망월동	새남해 새마을금 고	남해군 이동면	근저 당	
3	북변리	266-15	답	162	162	서O수	남해읍 북변리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 중구	근저 당	
4	북변리	311-2	답	197	197	수광 종합건설 주식회사	진주시 상평동	하동군 수산업 협동조 합	하동군 금남면	자상 권 근저 당	
5	북변리	272-1	답	176	176	박O득	남해읍 북변리				
6	북변리	273-3	답	32	32	하O호	남해군 남면				
7	북변리	310-4	답	60	60	박O주	남해군 서면				
8	북변리	308-3	대	8	2	남해군					
9	북변리	308-5	대	109	109	박O심	남해군 남면				
10	북변리	308-7	대	175	175	서O영	남해군 설천면				
						정O현	남해군 설천면				
11	북변리	306-18	답	162	162	박O수	남해읍 북변리				
12	북변리	304-16	대	66	66	박O봉	남해읍 북변리				
13	북변리	304-14	답	36	36	임O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 54길				

14	북변리	304-18	대	54	50	남해군					
15	북변리	305-1	답	10	10	박O경	남해읍 북변리				
16	북변리	472-1	답	191	191	박O경	남해읍 북변리				
17	북변리	473-5	답	183	183	박O욱	서울 동작구 사당로 2가길	새남해농 업협동조 합	남해군 고현면	근저 당	
18	북변리	474-4	답	112	95	최O례	남해읍 북변리				